##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0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윤호중・홍기원・한병도

김한규 · 정성호 · 이병진

용혜인 • 박희승 • 강득구

문진석 • 한민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 홍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함. 이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위기경보의 발령, 응급조치, 대피명령 등을 신속히 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본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계획된 국회나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한 수준의 위기 경보의 발령 또는 응급조치, 재난사태 선포 등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과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재난대응을

위해 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대응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1조의2(국무위원 등의 재난대응을 위한 이석 허가) ① 제121조에 따라 출석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석(離席)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제1항에 따라 이석을 요청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이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재난대응 담당 정부위원은 기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석을 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에 재난대응을 위한 이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절> 제121조의2(국무위원 등의 재난 대응을 위한 이석 허가) ① 제 121조에 따라 출석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석(離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제1항에 따라 이석을 요청하는 경우 허가할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재난대용
담당 정부위원은 기타 정부위 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석을 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 는 정부위원은 7일 이내에 본 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에 재난 대응을 위한 이석 사유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